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지정 체계를 원자력안전법 내 다른 원자력시설과 동일하게 건설·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533호, 2024.10.22. 공포, 2025.10.23. 시행)됨에 따라, 조문의 구성체계 및 허가 절차, 검사 체계 등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문 구성 체계 정비(안 제1절 및 제1절의2)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아래 제1관부터 제3관까지 정련, 변환·가공 및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 제4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5관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로 구분하고 있던 것을 개정 법률에 맞춰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정비함.

나. 허가 절차 정비(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발전용원자로시설 등 여타 시설과 달리, 심사계획의 통보, 허가의 처리기간, 위원회의 심의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함.

다. 검사 제도 정비(안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7조, 제63조, 제64조, 제68조)

현행 사업의 허가·지정 이후에 실시하던 검사들을 건설 및 운영허가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개정하고, 시설별로 검사 명칭이 상이하던 사용 전 검사와 시설검사를 사용 전 검사로 명칭을 통일하는 등 검사 제도를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을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운영 및 핵물질사용 등”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핵연료주기사업”을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로 한다.

제48조 앞의 “제1관 정련사업”을 삭제한다.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내 동일한 목적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48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5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그 허가 전에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52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앞의 “제2관 변환 및 가공사업”을 삭제한다.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사용 전 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정련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같다)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제2항의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핵연료주기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1. 그 공사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2. 그 성능이 법 제36조제2호 및 법 제3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제54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따라 각 목과 같다.

1. 변환 또는 가공시설

가. 토목·건축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및 공사 공정별로 구조 및 강도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누설시험이 가능할 때

나.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가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비부분 상호 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다. 기밀(기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구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시험이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수 있을 때

라.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설비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마.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가.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그 밖에 기밀 또는 수밀이나 내부식(耐腐蝕)이 요구되는 재료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 강도시험, 비파괴검사시험 또는 화학분석시험을 할 때

나. 사용후핵연료의 반입시설 또는 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처리설비 본체, 제품저장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의 조립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주요 부분의 치수 측정이 가능할 때나 강도시험, 비파괴검사시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때

다. 건물, 계측제어계통 시설, 방사선관리시설, 그 밖의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조립에 대해서는 각 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최대사용후핵연료처리능력으로서 시험운전을 할 때

마.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5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자(정련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56조(공사개시기간)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5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제26조 중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본다.

제58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운영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하려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내 동일한 목적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운영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58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핵연료주기시설이 건설되지 아니하여 사용 전 검사가 불가능한 기간

3.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61조 앞의 “제3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삭제한다.

제61조부터 제6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려면 그 허가 전에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62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정기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실시한 검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단, 정련시설은 제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9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경우
2.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이 제5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제64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정련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3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6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정련·변환 또는 가공을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2.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제66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3.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4.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6.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7.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8.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용 또는 실험용인 경우
2.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제67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 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것

③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 앞의 “제4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를 삭제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제26조 중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9조의6제1항”으로 본다.

제4장제1절제5관(제68조의2)을 삭제한다.

제1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제1항제3호”를 “제36조제3호, 제39조의5제1항제3호”로 한다.

제175조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 법 제39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175조의2제1항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 법 제39조의7제2항”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가·허가 또는 지정”을 “인가·허가”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전단 및 후단,”을 “및”으로, “제2항 전단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과”를 “제3항 본문,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 중 “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제3항”을 “법 제34조, 제44조 및 제68조의3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7호가목 중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제35조제3항 단서, 제39조의4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5조의2”를 “법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43조”를 “법 제39조의2 및 제43조”로, “사업개시”를 “건설의 중단 등 및 운영의 개시”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허가 또는 지정이”를 “허가가”로 한다.

라. 법 제28조제6항(법 제34조, 제44조 및 제6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 완료 검사

마. 법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의6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검사

별표 9 제1호라목 중 “법 제44조”를 “법 제39조의3 및 제44조”로,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특정핵물질”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를 “법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의6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

기시설건설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 법 제39조의7제1항”으로,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 법 제39조의7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4) 및 (4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제2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나.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제3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다.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제1항 제5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라. 법 제37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제6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마. 법 제3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제7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바. 법 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제8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사. 법 제9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제9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4의2)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 련·변환 또는 가공시설 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 터 2년 내에, 사용후핵연 료처리시설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내에 허가받은 운영을 개시하 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운영을 중 단한 경우	법 제39조의7제 1항제2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나. 법 제39조의4제3항 본 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 한 경우	법 제39조의7제 1항제3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다. 법 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9조의7제 1항제5호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라. 법 제39조의6제2항, 제 98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의7제 1항제6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마. 법 제41조 또는 제92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한 경우	법 제39조의7제 1항제6호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12개월	50억원
바. 법 제40조제1항·제2 항, 제89조제5항, 제94 조, 제96조 또는 제106 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의7제 1항제7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사.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의7제 1항제7호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12개월	50억원
아.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의7제 1항제7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자.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 되는 제15조제1항을 위 반한 경우	법 제39조의7제 1항제8호	1개월	4억원	2개월	8억원	3개월	12억원
차. 법 제99조에 따른 허가	법 제39조의7제	2개월	8억원	4개월	16억원	8개월	32억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1항제9호						
------------	-------	--	--	--	--	--	--

별표 12 제2호커목 위반행위란 커목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35조 제3항”으로, “제2항”을 “제39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터목 위반행위란 터목 중 “법 제39조를”을 “법 제39조 또는 제39조의8을”로 하며, 같은 호 노목 위반행위란 노목 중 “법 제43조”를 “법 제39조의2 또는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도목 위반행위란 도목 중 “법 제44조”를 “법 제39조의3 또는 제44조”로 하며, 같은 호 로목 위반행위란 로목 중 “법 제44조”를 “법 제39조의3 또는 제44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u> <u>제1절 핵연료주기사업</u> <u>제1관 정련사업</u> <u>제48조(허가신청) 법 제35조제1항</u> 본문의 전단에 따라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제49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5조</u> 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정련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	<u>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운영 및 핵물질사용 등</u> <u>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u> <u><삭 제></u> <u>제48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35조</u> 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내 동일한 목적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u>제49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u> 는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정기검사) 정련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1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8조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
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52조(준용규정) 정련사업자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설치자”는 “정련사업자”로 본
다.

제50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
회는 제48조에 따른 핵연료주기
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을 받은 경
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
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5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
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그 허가 전에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
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52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
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
다)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

제2관 변환 및 가공사업

제53조(허가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라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3조(사용 전 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정련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같다)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제2항의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핵

제5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공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료주기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1. 그 공사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2. 그 성능이 법 제36조제2호 및 법 제3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제54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따라 각 목과 같다.

1. 변환 또는 가공시설

가. 토목·건축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및 공사 공정별로 구조 및 강도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누설시험이 가능할 때

나.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가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비부분 상호 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다. 기밀(기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구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시험이나 기밀
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수 있을 때

라.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설비
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마.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가.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
體), 그 밖에 기밀 또는 수
밀이나 내부식(耐腐蝕)이
요구되는 재료 또는 부품
에 대해서는 기밀시험 또
는 수밀시험, 강도시험, 비
파괴검사시험 또는 화학분
석시험을 할 때

나. 사용후핵연료의 반입시설
또는 저장시설, 사용후핵
연료처리설비 본체, 제품

제55조(시설검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가공사업자는 가공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가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시설 또는 방사성 폐기물의 폐기시설의 조립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주요부분의 치수 측정이 가능할 때나 강도시험, 비파괴 검사시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때

다. 건물, 계측제어계통 시설, 방사선관리시설, 그 밖의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조립에 대해서는 각 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최대사용후핵연료처리능력으로서 시험운전을 할 때

마.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5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정련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

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공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가공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1. 그 공사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2. 그 시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6조(시설검사 실시)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대상별 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건축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및 공사 공정별로 구조 및 강도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누설시험이 가능할 때

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56조(공사개시기간)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2.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가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비부분 상호 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3. 기밀(기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구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시험이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수 있을 때

4.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설비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제57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가공사업자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정기검사) ① 법 제37조제

제5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자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제26조 중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본다.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제58조(운영허가 신청) 법 제39조

1항에 따라 가공사업자는 가공 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실시한 검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가공 시설의 성능이 제55조에 따른 시설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59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8조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60조(준용규정) 가공사업자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설치자”는 “가공사업자”로 본다.

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하려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내 동일한 목적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운영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58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제61조(지정신청) ①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2조(변경승인 신청)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사용후핵연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핵연료주기시설이 건설되지 아니하여 사용 전 검사가 불가능한 기간

3.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삭 제>

제6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려면 그 허가 전에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62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지정사항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사용 전 검사) ①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업자는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1. 그 공사가 법 제35조제3항에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정기검사) ① 핵연료주기

시설운영자는 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실시한 검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단, 정련시설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9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2. 그 성능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제64조(사용 전 검사의 실시) 제63조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그 밖에 기밀 또는 수밀이나 내부식(耐腐蝕)이 요구되는 재료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 강도시험, 비파괴검사시험 또는 화학분석시험을 할 때

2. 사용후핵연료의 반입시설 또는 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처리설비 본체, 제품저장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의 조립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주요 부분의 치수 측정이 가능할 때나 강도시험, 비파괴검사시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때

3. 건물, 계측제어계통 시설, 방

경우

2.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이 제5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제64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정련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3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사선품리시설, 그 밖의 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의 조립에 대
해서는 각 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
능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최대사용후핵연료
처리능력으로서 시험운전을
할 때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제65조(정기검사) ① 법 제37조제
1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
설의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
우 그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이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경우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서

제6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9조
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
다.

1. 정련·변환 또는 가공을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운영허가를 받
은 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
터 2년

2.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핵
연료주기시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
0년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는 능력과 그 밖의 성능이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제6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8조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년을 말한다.

제66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3.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4.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6.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7.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 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8.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배출 및 저장에

<u>제67조(준용규정)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가공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로 본다.</u>	<u>관한 조치</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1.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용 또는 실험용인 경우</u> <u>2.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u> <u>3.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u> <u>제67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39조의4 제5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u>
---	---

제4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① 법 제35조제1

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것

③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8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자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3.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4.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6.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7.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 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8.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 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제26조 중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9조의6제1항”으로 본다.

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
이 연구용 또는 실험용인 경
우

2.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
이로 인하여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
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
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제5관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삭 제>

제68조의2(핵연료주기시설의 해
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
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핵연료주기시
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
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
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
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삭 제>

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것

③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법 제11조제3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

----- 제36조제3호, 제39조의5제1항제3호-----

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

1. · 2. (현행과 같음)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
----- 법 제38조제2항, 법 제39조의7제2항 --

-----.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 법 제38조제2항, 법 제39조의7제2항 -----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연 락 처	(02) 397 - 7264